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안철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589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중소기업 퇴직연금 부담금 세액공제 신설(안철수의원안)	3

I. 개요

1. 안철수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2589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안철수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9. 2.
- (3) 회 부 일 : 2025. 9. 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퇴직급여제도(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퇴직금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하여야 함.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사업체 규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도입률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중소기업도 2022년 기준 62.5%가 최소적립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의 경우 열악한 재무환경으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임.

또한,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조세지원이 이뤄지는 반면 사용자에게 대하여는 손금산입 외에 별도의 조세지원이 이뤄지지 않

는 것도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부담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려는 것임(안 제29조의9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중소기업 퇴직연금 부담금 세액공제 신설(안철수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신 설>	○ 중소기업 퇴직연금 부담금 세액공제 신설(안 제29조의9) ○ 공제대상: 중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설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부담하는 퇴직연금제도 등의 부담금 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공제율: 20% ○ 적용기한: 2028. 12. 31.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시 미적용 ○ 10년간 이월공제 허용 ○ 시행일: 2026. 1. 1. ○ 적용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안철수의원안 2025. 9. 2. 발의(의안번호 12589)

□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 설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2028년 12월 31일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또는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부담하는 퇴직연금제도 등의 부담금 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¹⁾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사외(社外)에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퇴직연금제도는 ① 사용자가 퇴직연금부담금을 적립하여 자기 책임으로 운용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급여(퇴직 시점 평균 임금 × 근속연수)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Defined Benefits), ② 사용자 납입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고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Defined Contribution), ③ 개인이 부담금 납입과 운용책임을 모두 지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Individual Retired Pension)로 구분되고,²⁾

이와 별개로 ④ 상시근로자 30인 이하인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

말한다.

8.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9.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10. "개인형퇴직연금제도"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써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1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중소기업(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 2)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DB, DC를 갈음하여 사용자가 IRP에 퇴직급여를 적립할 수 있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①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제4조제1항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마련되어 있음.³⁾

[퇴직급여 제도 개요]

구분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 연금기금제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	
제도 개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사용자가 금융기관에 적립한 부담금을 사용자가 직접 운용하여 근로자에게 확정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 급여 수준이 퇴직금과 동일	사용자가 금융기관에 적립한 부담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여 퇴직급여로 지급받는 제도 ※ 급여 수준이 운용 손익에 따라 변동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제도 + 개인이 노후 소득을 위해 적립할 수 있는 제도	중소기업 사용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적립한 부담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모아 전문적으로 운용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 운용방식은 국민연금과 유사
적용 대상	모든 사업장			①퇴직급여가 발생한 근로자, ②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③공무원·자영업 자 등 소득이 있는자	상시 30명 이하 사업장
규약	취업규칙	퇴직연금규약		불필요	
운용(자산) 관리계약주체	-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		가입자와 퇴직연금사업자	사용자와 근로복지공단
수수료부담	-	사용자		가입자	사용자
부담금납부	-	사용자		가입자	사용자
사외적립 부담금수준	사용자 재량	퇴직급여 추계액의 100%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가입자 재량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근로자추가납입	-	불가	가능		
퇴직급여형태	일시금	연금 또는 일시금			
연금수령요건	해당없음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 10년 이상		55세 이상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 10년 이상
퇴직급여수준	퇴직 시 평균임금 30일분 x 근속연수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 운용손익		적립금+ 운용손익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 운용손익
운용주체	-	사용자	근로자	가입자	근로복지공단
운용위험부담	해당 없음	사용자	근로자	가입자	근로자
중도인출	가능	불가	가능		
담보제공	불가	50%까지 가능(주택 구입 등 특정한 사유)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2025. 1.

재정지원	해당없음	사업주·근로자 각각 사업주 부담금의 10%(월 268만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
------	------	---

자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2025. 1.

□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부담금의 20%만큼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필요한 측면이 있어 보임.

첫째, 현재 상시근로자 수가 적은 중소기업의 경우 퇴직연금제도 도입률이 낮으므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경제적 유인이 필요해 보임.

퇴직연금의 사업장 도입률 및 근로자 가입률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적은 사업장일수록 퇴직연금 도입률 및 근로자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최근 3년간 퇴직연금 사업장 도입률 및 근로자 가입률]

(단위: %)

연도	규모	5인 미만	5- 9인	10- 29인	30- 49인	50- 99인	100- 299인	300인 이상	전체 사업장
2021	사업장 도입률	10.6	33.1	57.1	73.0	80.4	87.0	91.4	27.1
	근로자 가입률	11.8	30.2	48.3	56.3	60.8	68.5	70.7	53.3
2022	사업장 도입률	10.5	32.9	57.3	73.0	80.7	87.3	91.9	26.8
	근로자 가입률	11.9	30.0	48.6	56.6	61.0	68.9	70.5	53.2
2023	사업장 도입률	10.4	32.3	56.8	73.5	81.3	87.6	91.7	26.4
	근로자 가입률	11.8	29.5	48.2	56.2	60.8	68.7	70.2	53.0

주: 참고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2024년 기준 17,380개 사업장이 가입하였고 79,687명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총 적립금액은 5,926억원임.

자료: 국가데이터처

둘째, 구직자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 현상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고, 낮은 임금과 복지 수준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39세 이하 청년 취업자는 2003년 기준 47.7%에서 2023년 30.9%로 16.9%p 감소하였음.

또한, 중소기업의 높은 이직률은 중소기업의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의욕 저하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구직자의 중소기업 기피 심화로 연결되며,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성장 감소로 이어지고 있음.

[청년 인력의 중소기업 취업자 현황]

(단위: 천명, %)

구분	2003	2013	2023
청년	9,751 (47.7)	8,368 (36.2)	7,817 (30.9)
29세 이하	4,191 (20.5)	3,347 (14.5)	3,415 (13.5)
30세~39세	5,560 (27.2)	5,021 (21.7)	4,402 (17.4)
전체	20,428 (100.0)	23,118 (100.0)	25,329 (100.0)

자료: 2025년 중소기업 10대 이슈와 정책과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24. 12.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국인 취업 기피(74.8%)’이고, 세부적으로 ‘열악한 작업환경, 임금·복지 수준(64.0%)’이 가장 높게 나타남.⁴⁾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월 평균소득 격차는 287.4만원으로 소득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

4) ‘2022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 애로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중소기업중앙회, 2022. 12.

나라, 2023년 기준 300인 미만 기업의 월평균 복지비용은 151,000원이었고 300인 이상 기업은 434,000원으로 복지비용 격차가 283,000원에 달하였는데, 이는 2013년(134,000원) 대비 2배 이상으로 크게 확대된 수치임.⁵⁾

[기업규모별 월 평균소득]

(단위: 만원)

구분	대기업(a)	중소기업(b)	평균소득 격차(a-b)
2023년	593	298	295
2022년	591	286	305
2021년	563	266	297
2020년	529	259	270
2019년	515	245	270
최근 5년 평균	558.2	270.8	287.4

자료: 연도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통계청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퇴직연금 지급을 위한 납입금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임직원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의 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고, 이때 퇴직연금제도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에 대해서는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함.⁶⁾

5) 2025년 중소기업 10대 이슈와 정책과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24. 12.

6)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납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부금 또는 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대한 평균 실효세율이 14% 수준임을 고려할 때 퇴직연금 납입금에 대해서는 현행법 하에서도 14%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둘째, 정부는 2030년까지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할 예정인바⁷⁾ 기업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직원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등"이라 한다)의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같은 법 제23조의6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및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제44조제4항을 적용하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의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제1호 및 제1호의2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며, 둘 이상의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연금등의 부담금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과 제3항 본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금에 대한 부담금

1의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과 제3항 본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금에 대한 부담금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나.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그 재직기간 중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사람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그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더한 금액

2.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

⑤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임금체불 근절 대책」, 관계부처 합동, 2025. 9.

이에 더하여 기획재정부는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므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영세기업의 경우 세액공제의 효과가 제한되어 과세형평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셋째, 근로자의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양한 세제상 우대조치 및 특례가 적용되고 있음.

연간 연금소득 수령액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 수령 시 3%~5%⁸⁾가 원천징수되고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1,500만원을 초과하는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6%~45%) 하거나 연금소득만을 별도로 분리과세(15%)하도록 선택할 수 있음.⁹⁾

8) 연령별로 70세 미만 5%, 70~80세는 4%, 80세 이상은 3%가 과세되며,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은 4%의 세율이 적용됨.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5의2.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이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수령한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각 목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때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가.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다음의 세율

나이(연금수령일 현재)		세율
	70세 미만	100분의 5
70세 이상	80세 미만	100분의 4
80세 이상		100분의 3

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

9)「소득세법」

제64조의4(연금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1. 종합소득 결정세액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에 100

또한, 근로자는 퇴직연금계좌에 연간 1,80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고,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을 합하여 최대 연 90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¹⁰⁾

문 의 처
02)6788-5154

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나. 가목 외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10)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제14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계좌세액공제"라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전환금액"이라 한다)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한다.

④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을 적용할 때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으로 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계산방법,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